

**B.E. 2548 (2005)년**  
**“식품법 B.E.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12호**

---

태국 헌법의 제29조, 제39조, 제48조 및 제40조와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제한에 관한 일부 규정인 B.E. 2522(1979)년 식품법 제4조, 제14조,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보건부장관은 아래와 같이 보건부령을 제정하였다.

1항. B.E. 2522(1979)년 식품법에 따른 보건부령 제1호에 2/1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2/1항. 제 6조(7)에서 장관이 정한 생산 절차, 생산에 사용하는 도구, 식품 보관법에 따라 식품을 생산하도록 허가받은 자는 장관의 규정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평가는 식품의약품청장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2항. B.E. 2522(1979)년 식품법에 따른 보건부령 제1호 5항 세 번째 단락으로 아래를 추가한다.

"제 6조(7)에서 장관이 정한 생산 절차, 생산에 사용하는 도구, 식품 보관법에 따라 식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허가서 갱신 신청은 식품의약품청이 규정한 다른 증거를 획득하지 않는 한 제 2/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항. B.E. 2522(1979)년 식품법에 따른 보건부령 제1호 7항 세 번째 단락을 폐지하며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한다.

"생산지 또는 식품 보관 장소 이전 허가 신청에는 2항 및 2/1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B.E. 2522(1979)년 식품법에 따른 보건부령 제1호 8항을 폐지하며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한다.

"8항. 본 보건부령에 따른 신청서는 아래의 장소에 제출한다.

(1) 방콕은 식품의약품청, 보건부 또는 식품의약품청장이 지정한 기타 장소에 제출한다.<sup>1)</sup>

(2) 다른 지방에서는 식품 생산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의 지방보건소 또는 식품의약품청장이 지정한 기타의 장소에 제출한다."

B.E.2548(2005)년 8월 22일  
수차이 자른랴따나꾼(Suchai Charoenrattanakul)  
보건부장관

---

1) 2005년 9월 15일의 관보 제121권/제81A편/1쪽:B.E.2548(2005).

**주석:** 본 보건부령을 공포하는 이유는 판매용 생산 식품은 식품 생산 및 보관을 위한 생산 방법, 장비에 대한 장관의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침에 따라 식품을 생산하는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생산의 표준을 국제적인 시스템과 동등하게 일치하도록 높이려는 조치이다. 무역 경쟁을 위해서 뿐 아니라 판매용 식품의 생산사용 허가, 식품 생산사용 허가서의 갱신 및 식품 생산 또는 보관장소 이전 신청서는 식품의약품이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장이 고시한 다른 장소에서의 신청을 요청을 용이 하게하도록, 본 보건부령이 제정되었다.

티티퐁 (Thitiphong)  
2005년 9월 20일 작성  
프롬낫 (Phromnat)  
2019년 2월 20일 수정